

경운대학교 연구시설안전환경관리센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에 의거 경운대학교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운대학교 연구시설안전환경관리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의 조직, 운영,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연구 주체의 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분야 학과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센터에는 교원, 직원, 조교, 계약직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④기타 센터의 업무는 『경운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결산 수립 업무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등 제 규정 제정·변경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정밀)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업무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에 관한 제반 업무
7. 연구실 의료폐기물 및 실험폐수 등의 수거·처리에 관한 제반 업무
8. 연구실 생물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9. 외부 기관 공문접수 및 발송에 관한 제반 업무
10. 연구실 안전사고에 관한 제반 업무
11.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제4조 (회의 및 심의) ①센터의 제반업무는 경운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에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21.12.0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 시행한다.